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2. 장 소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 8층 은하수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사항

제1호 의안 : 제25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성모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 배당금 200원

5.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별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실 필요
없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9년 2월 1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5일 오전9시 ~ 2026년 3월 24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 확인용 인증서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주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참석장
- 문의처 : 053-589-1692 (에스앤에스텍 재경본부)

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42 (호림동)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대표이사 정 수 홍 (직인생략)

[별첨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5조 (소집지) ① (생략) ② <신설>	제25조(소집지와 <u>개최방식</u>) ① (생략) ② <u>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u>	개정상법 반영 주주총회 개최 방식 조문정비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u>전자문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의결권의 대리행사 조문정비
제34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개정상법 반영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조문정비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u>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② <u>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u>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조문정비
제3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제3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개정상법 반영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조문정비

(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독립이사</u>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상법 반영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조문정비 감사위원 선출 3%를 강화에 따른 조문정비
제48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7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7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u>2명</u>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개정상법 반영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황 관련 조문정비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9조의 2, 제47조 2항과 5항의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2항, 제31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상법 반영 효력 발생시점 명시

[별첨2] 제3호 의안 : 이사의 선임 건

(1)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신규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채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용대 (1972.07.15)	現) 에스앤에스텍 연구소장 前) SK하이닉스 수석	이사회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3]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 (재선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채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성모 (1962.11.13)	現) 에스앤에스텍 사외이사 前) 피케이엘 부사장 前) 듀폰코리아 포토마스크 前)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